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85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
설치 및 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2. 2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2. 2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
- 발의자: 박정환 의원 외 7명
- 발의일자: 2022. 1. 18.(화)
- 회부일자: 2022. 1. 18.(화)
- 검토기간: 2022. 1. 19.(수) ~ 1. 28.(금)

2. 제정이유

-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 및 관리주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- 라. 안내문 게시, 유지관리, 대장작성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~안 제7조)
- 바.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마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함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시설, 공원, 산책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한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,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“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”을 통해 야외운동기구가 2004년 47,589대에서 2012년 83,019대로 증가하였지만 안전기준과 사후관리가 미비해 안전사고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였고
- 이에 따라 2014년 11월 11일 달서구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」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
- 그러나 행정입법으로서 지침을 포함한 규칙은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대외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는 데
- 야외운동기구의 설치·관리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지침이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, 운동기구의 설치·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·집행 및 사무위탁 등이 필요한 점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따라 2022년 1월 현재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87개, 이중 대구광역시 북구, 서구, 수성구, 중구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.
- 또한 2022년 1월 현재 달서구 내 218개소에 약 1,317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설치·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.
- 이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한 설치·관리를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□ 제정조례안에 총괄부서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

- 달서구 내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와 체육청소년과로 각각 161개소 약 957개와 57개소 약 360개의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음.
-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현황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안에 총괄부서를 특정할 필요 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운동기구 현황

(2022년 1월 현재)

구분	설치장소	설치기구수	비고
합계	218	1,317	
공원녹지과	161	957	
체육청소년과 ¹⁾	57	360	

1) 도시재생과에서 설치한 1개 장소 3개의 설치기구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로 관리를 이관하였음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

1. <생략>

2. 주민의 복지증진

 가.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항

 나.~차. <생략>

3.~7.<생략>

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8조(지방 체육의 진흥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②·③ <생략>